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2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2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23.(월)	담당부서	석탄광물산업과(광물자원팀)
담당과장	양동우 팀장(044-203-5259)	담 당 자	이근모 사무관(044-203-5265)

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」 국무회의 의결(8.24)

-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(9.10일 시행)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올해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「**한국광해광업공단법***」('21.3.9. 공포)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힘

*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은 **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**을 신설하고, **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**하는 등 **재무적·기능적 효율화**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
□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①공단의 **등기절차**, ②광업자금 등 자금의 **융자절차**, ③**사채의 발행**방법 및 절차, ④해외자산관리위원회 **위원 자격** 및 **사무국 구성**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

① 공단은 목적, 명칭, 주사무소 소재지,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,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, 목적·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(제2조~제8조)

② 공단은 **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**로 **자금을 융자**해주고,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**회수가 어려울 경우, 추가담보 제공** 등 요구 가능(제9조~제10조)

③ 공단은 모집,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**사채를 발행**할 수 있음(제12조~제23조)

④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, 해외자원개발·금융·법률·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·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(부칙 제3조)

□ 「한국광해광업공단법」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「한국광물자원공사법」은 폐지, **한국광물자원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**함

○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**전주기 광업지원 체계 효율화 가능**

* 국내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: 기술개발 → 탐사 →개발·생산 → 광해방지

○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**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**하고, 대신 희소금속 등 **전략광물 비축 확대** 및 **수요기업 장기 구매계약 지원** 등 핵심광물의 **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**

□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"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**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**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

○ 양 기관의 기능 및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하여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**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**하도록 하겠다"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(광물자원팀) 이근모 사무관(☎ 044-203-52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